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06回(臨時會)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1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호	770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홍기서의원 외 4인

1. 제정이유

우리 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을 마련, 여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지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5조 내지 제9조)
 - 구성 :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행, 결산, 지원대상 등 심의
-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 (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과 여성업무담당주사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4. 예산수반사항 : 예산조치 필요

5. 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의 복지사업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3.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연수 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5.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7. 기타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기금은 서울특별시종로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종로구의회의원 2인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여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여성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 대장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 재			
				담당	담당 주사	과장	국장

